

2003. 11. .

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
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(시 민 봉 사 과 소 관)

전문위원 김 세 현

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룡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